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
교육위원회 보고자료

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
혁신미래교육

주요업무보고

2019. 2.

학교안전공제회

일반 현황

□ 설립근거

- ❍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·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

□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

- ❍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통한 피공제자 보호
- ❍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통한 체계적·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
- ❍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의 신속·적정한 보상·지원을 통한 학교안전망구축
- ❍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

□ 연혁

- ❍ ’87. 12. 09. 「민법」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
- ❍ ’88. 03. 01. 보상업무 개시
- ❍ ’07. 09. 01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
- ❍ ’07. 09. 03.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설립등기
- ❍ ’12. 04. 01. 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
- ❍ ’15. 01. 20.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
- ❍ ’16. 09. 01. 여행자공제사업 개시

▢ 조직 및 정·현원

❍ 2부 4팀 1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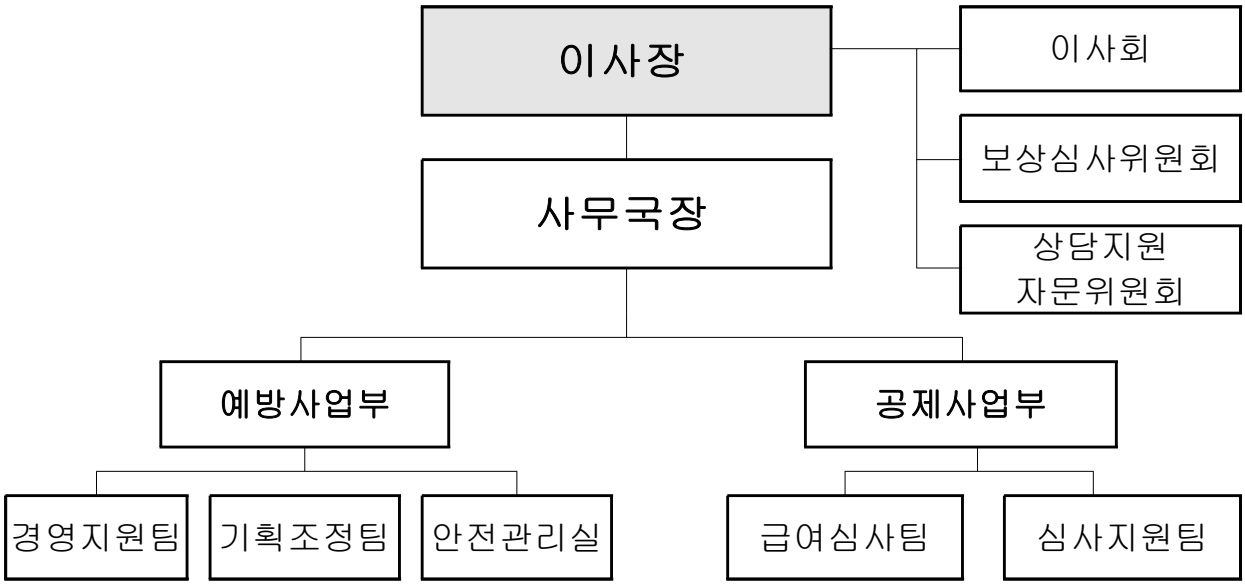

❍ 정·현원

- 특정직 및 일반직

(단위: 명)

구분	특정직	일 반 직				계
	3급	5급	6~7급	8~9급	소계	
정원	1	2	5	7	14	15
현원	1	1	5	8	14	15

- 계약직

(단위: 명)

구분	실장	과장	팀장	대리	주임	사원	계
정원	1	4	5	5	6	2	23
현원	1	3	4	5	3	0	16

▢ 시설 현황

❍ 소재지: 영등포구 양산로 107 3층, 7층

❍ 건 물: 543㎡

☐ 임원 현황

- ❍ 이사장: 김형태 (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, 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)
- ❍ 임　기: 3년 ('16.9.1. ~ '19.8.31.)
- ❍ 구성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학교장	학부모	교수	공무원	변호사	전문의	회계사	기타	계
이사	8	2	1	1	1	1	-	1	15
감사	-	-	-	1	-	-	1	-	2
계	8	2	1	2	1	1	1	1	17

☐ 보상심사위원 현황

- ❍ 위원장: 강영숙 (교육재정과장)
- ❍ 임　기: 2년 ('17.9.19. ~ '19.9.18.)
- ❍ 구성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학교장	학부모	교수	공무원	변호사	전문의	보험 전문가	계
인원	3	2	1	2	2	2	3	15

☐ 상담지원자문위원 현황

- ❍ 위원장: 이영식 (중앙대학교병원 전문의)
- ❍ 임　기: 2년 ('18.11.1. ~ '20.10.31.)
- ❍ 구성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전문의	변호사	상담 전문가	교수	공무원	학부모	계
인원	2	1	1	1	1	1	7

☐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

(단위: 교, '19.1.10. 현재)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교육시설	외국인학교	기타학교	합계
가입대상교	856	596	384	320	30	13	2	29	2,230
가입교	836	596	384	320	30	13	2	29	2,210
미가입교	20	-	-	-	-	-	-	-	20

☐ 공제급여 지급 현황

❍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천원)

구 분	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교육	외국인	기타	계	전년대비 증감율
2012	건수	640	3,780	3,632	2,850	67	32	10	18	**11,029**	-
	금액	59,232	1,159,762	1,750,903	1,406,222	45,959	14,344	857	3,926	**4,441,205**	-
2013	건수	725	3,774	3,865	2,917	65	35	14	32	**11,427**	**3.6%**
	금액	67,035	1,077,019	2,352,165	2,426,103	26,281	134,274	7,998	13,471	**6,104,346**	**37.4%**
2014	건수	1,026	4,347	4,506	3,437	124	25	16	20	**13,501**	**18.1%**
	금액	100,143	1,683,590	1,917,063	2,841,416	37,738	29,853	8,506	6,135	**6,624,444**	**8.5%**
2015	건수	1,080	4,305	4,339	3,577	95	27	8	27	**13,458**	**△0.3%**
	금액	99,278	945,155	1,871,357	1,751,840	23,375	11,672	1,234	8,830	**4,712,741**	**△28.9%**
2016	건수	997	4,378	3,919	3,360	80	22	8	19	**12,783**	**△5.0%**
	금액	352,159	1,405,546	1,362,424	1,646,869	19,283	5,742	1,008	9,036	**4,802,067**	**1.9%**
2017	건수	1,008	4,319	3,948	3,175	72	28	11	24	**12,585**	**△1.5%**
	금액	224,293	1,265,548	1,383,804	2,346,297	73,431	41,403	3,165	6,260	**5,344,201**	**11%**
2018	건수	884	4,261	3,581	2,995	88	29	7	19	**11,864**	**△5.7%**
	금액	125,544	857,802	1,679,477	3,176,492	20,622	15,043	772	2,926	**5,878,678**	**10%**

❍ 2018년도 공제급여 지급 세부 현황

- 총괄 현황

구분	2018년	2017년	비 고
건수	11,864건	12,585건	721건(5.7%) 감소
금액	58억 7천만원	53억 4천만원	5억3천만원(10%) 증가

- 시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체육수업	114	1,148	1,382	1,211	15	-	2	7	3,879
실험실습	-	14	27	50	2	-	-	-	93
교과수업	362	387	214	119	26	2	1	-	1,111
청소시간	2	20	18	15	-	-	-	-	55
휴식시간	125	1,688	1,185	713	20	11	3	6	3,751
방과후시간	214	637	628	743	12	9	1	6	2,250
기 타	67	367	127	144	13	7	-	-	725
계	884	4,261	3,581	2,995	88	29	7	19	11,864

- 장소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교실	485	1,014	485	331	43	4	2	1	2,365
운동장	109	1,173	1,530	1,419	10	4	2	5	4,252
체육관	91	843	791	688	10	1	3	4	2,431
계단	37	395	211	181	2	7	-	4	837
복도	82	573	322	141	11	7	-	2	1,138
기타	80	263	242	235	12	6	-	3	841
계	884	4,261	3,581	2,995	88	29	7	19	11,864

-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사 망	-	-	-	-	-	-	-	-	-
장 해	1	1	9	30	-	-	-	-	41
골 절	81	910	824	594	15	15	2	5	**2,446**
열 상	438	966	501	448	35	8	4	1	**2,401**
관절염좌	99	662	628	871	8	1	-	9	2,278
기 타	265	1,722	1,619	1,052	30	5	1	4	4,698
계	884	4,261	3,581	2,995	88	29	7	19	**11,864**

☐ 예산현황

(단위: 천원, '19.1.10. 현재)

세부사업	2019년도	2018년도		증감 (A-B)	증감율 (%)
	본예산(A)	본예산(B)	최종예산		
공제급여	6,820,000	5,883,000	5,883,000	937,000	15.9
보상심사위원회	52,600	30,400	30,400	22,200	73.0
소송업무	432,084	145,800	145,800	286,284	196.4
비용의 보전	82,500	0	0	82,500	0
예방사업	605,030	678,000	678,000	△72,970	△10.8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	71,380	160,020	160,020	△88,640	△55.4
학교폭력피해지원	112,479	120,460	120,460	△7,981	△6.6
기관운영비	1,582,753	1,546,804	1,546,804	35,949	2.3
차기이월금	4,537,177	7,456,225	7,456,225	△2,919,048	△39.1
계	**14,296,003**	**16,020,709**	**16,020,709**	**△1,724,706**	**△10.8**

☐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

(단위: 천원, '19.1.10.현재)

번호	주요업무명	예산액		집행계획				쪽수
		'19	'18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1	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(공제급여 지급)	6,820,000	5,883,000	연중				9
2	보상심사위원회 운영	52,600	30,400	13,150	13,150	13,150	13,150	11
3	소송업무	432,084	145,800	108,021	108,021	108,021	108,021	13
4	비용의 보전	82,500	0	20,625	20,625	20,625	20,625	15
5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	71,380	160,020	연중				17
6	학교폭력피해지원	112,479	120,460	연중				19

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

☐ 성과

○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(공제급여지급)

- 요양급여: 11,823건, 3,267,589천원 지급
- 장해급여: 41건, 2,611,089천원 지급

○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
- 상담지원 비용: 1건, 190,000원 지급

○ 학교폭력피해지원

-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: 117건, 106,028천원 지급

☐ 한계

○ 공제급여 보상범위에 대한 수요자(학부모) 불만족

- 심사청구·소송 등 불복절차 증가

○ 상담지원 실적 미미

-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 미미

○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 지급 절차에 대한 민원 발생

- 가해자측에 대한 안내 미흡

☐ 개선 방향

○ 요양급여(치료비) 보상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

- 2018년 63% → 2019년 75% → 2022년 90%이상

○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제도 홍보

-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예정

○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 지급 절차 개선

- 피해자, 가해자 양측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 강화

작 성 자	예방사업부장 : 송효근 ☎ 6350-5220	담당 : 안승희 ☎ 5222

1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(공제급여 지급)

□ 사업 개요

○ 목적

-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

○ 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(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주요내용

- 지원대상: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
- 지원범위: 요양급여,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

○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

- 의무가입자: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장, 평생교육시설의 장
- 임의가입자: 외국인학교의 장

□ ’18년 추진 실적

○ 요양급여: 11,823건, 3,267,589천원 지급

○ 장해급여: 41건, 2,611,089천원 지급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요양급여	연중	12,500건
장해급여		30건
간병급여		2건
유족급여		1건
위로금		1건

□ 추진 계획

○ ’ 19년 주요 개선 사항

- 요양급여 보상범위 확대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체계 구현 예정

※ 2018년 치료비 지급률 63% → 2019년 예상 지급률 75%

○ 단계별 지급확장 프로세스 도입

- 열거지급형 → 열거확장지급형 → 포괄지급형 → 학교안전사고 수가 책정

□ 추진 일정

○ ’ 19. 1. 1. : 치료비(요양급여) 보장성 강화 시행

○ ’ 19. 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□ 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‘19.1.10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	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’19	’18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(공제급여 지급)	6,820,000	5,883,000	6,820,000				-
			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				
계	6,820,000	5,883,000	6,820,000				

작 성 자	예방사업부장 : 송효근 ☎ 6350-5220	담당 : 안승희 ☎ 5222

2 보상심사위원회 운영

□ 사업 개요

○ 목적

-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·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
-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

○ 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(보상심사위원회)

○ 주요내용

-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항 지원

□ ’18년 추진 실적

○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: 총 8회

- 총 8회의 보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88건의 심사청구 처리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	연중	8회 개최

□ 추진 계획

○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정 기간 준수

-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,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

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○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개최

- 심사청구에 따른 문서 수발 및 회의 진행

▢ 추진 일정

○ ’ 19. 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▢ 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‘19.1.10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	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’19	’18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보상심사 위원회	52,600	30,400	13,150 2회 개최	13,150 2회 개최	13,150 2회 개최	13,150 2회 개최	-
계	52,600	30,400	13,150	13,150	13,150	13,150	

작 성 자	예방사업부장 : 송효근 ☎ 6350-5220	담당 : 안승희 ☎ 5222

3 소송업무(소송, 자문, 교육감판결금 지원)

□ 사업 개요

○ 목적

- 학교안전사고, 학교폭력사고 등 본회와 관련한 소송에 대응
-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등과 관련한 자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
- 교육감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하여 공제회가 판결금 전액을 지원하고, 교육청에서 검토 후 매년 말(11월) 일괄 정산하여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

○ 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(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(공제급여액의 결정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주요내용

- 공제급여 청구의 소 등 공제회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판결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
- 소송사건 수행 중 발생하는 인지세,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급
- 공제급여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, 의료자문 비용 지급

□ '18년 추진 실적

○ 손해방지경감비용, 변호사선임료 등 : 30건, 125,948천원 지급

○ 송무활동비 : 25건, 2,240천원 지급

○ 공제급여관련 법률, 의료, 손해사정자문 등 : 56건, 17,380천원 지급

○ 교육감 판결금 지원

순번	사건번호	사건명	지급액(원)
1	2017나2043648	손해배상	450,000,000
2	2018가소204259	구상금	1,342,536
3	2012가단45786	손해배상	13,791,096
4	2018가소1626122	구상금	267,324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변호사선임료	연중	20건
소송비용		5건
송무활동비		20건
자문료		8건
교육감 판결금 지원		6건

□ 추진 계획

○ 학교안전사고, 학교폭력사고 등 소송에 대한 효율적 대응

○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지도감독 소홀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한 판결금 지급(공제급여 책임이 성립하는 부분에 한함)

□ 추진 일정

○ ’19. 1~12월 : 제기된 소송에 대응

○ ’19. 11월 : 교육감 판결금 정산 요청

□ 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‘19.1.10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	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’19	’18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소송업무	432,084	145,800	108,021 5건예상	108,021 5건예상	108,021 5건예상	108,021 5건예상	-
계	432,084	145,800	108,021	108,021	108,021	108,021	

작 성 자	예방사업부장 : 송효근 ☎ 6350-5220	담당 : 안승희 ☎ 5222

4 비용의 보전

▢ 사업 개요

○ 목적

-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

○ 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(비용의 보전), 시행령 제21조, 시행규칙 제7조

○ 주요내용

- 지원대상: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, 명예학교안전요원,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자
- 지원범위: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

▢ '18년 추진 실적

순번	사고내용	지급여부
1	돌봄교실에서 놀이교구보호대에 긁혀서 발목 부근을 베이자 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	지급
2	교사가 신문지를 감아 만든 막대기를 사용하여 A학생을 체벌함. A학생의 보호자인 고모로부터 형사고소	지급불가 (법률 요건 미충족)
3	보조교사가 특수 학생의 책, 노트를 떨어뜨리고 학생 스스로 줍도록 함. 김○○이 수학 0점을 맞은 것에 바보라 하고, 펜으로 얼굴에 바보라고 씀	지급불가 (법률 요건 미충족)
4	특수 학생이 문제를 풀 때 구박을 하고, 장난을 심하게 친다고 등짝을 2회 때리는 등 정서적, 신체적 폭력 행사	지급불가 (법률 요건 미충족)
5	훈계차원에서 꿀밤형태로 1회 머리를 쥐어 박았고, 그 때 마침 승강기 문이 열리며 학생이 승강기로 들어감	지급
6	보온병이 넘어져 학생이 화상사고를 입어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	지급불가 (법률 요건 미충족) *공제급여로 지급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손해방지·경감·긴급조치비용	연중	10건
변호사 선임료		10건
소송비용		5건

□ 추진 계획

○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변호사 선임료, 손해방지 경감비용 등 지원

□ 추진 일정

○ ’19. 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□ 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‘19.1.10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	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’19	’18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비용의 보전	82,500	0	20,625 2건 예상	20,625 2건 예상	20,625 2건 예상	20,625 2건 예상	-
계	82,500	0	20,625	20,625	20,625	20,625	

작 성 자	예방사업부장 : 송효근 ☎ 6350-5220	담당 : 안승희 ☎ 5222

5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
▢ 사업 개요

○ 목적

-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

○ 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(상담 지원 등)

○ 주요내용

- 대상: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, 그 가족
- 방법: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, 지원기간의 연장 등 심의
- 신청절차

지원신청	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·발송	→	접수 및 지원여부 심사	→	지원 대상자 확정	→	지원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
	학부모, 학교		공제회(자문위원회)		교육청		공제회

비용청구	비용청구서 및 치료비영수증 발송	→	접수 및 지급여부 심사			→	지급여부 결정 결정내용 통보
	학부모, 학교		공제회				공제회

※ '지원 신청'에 대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지원대상자 확정 결정 이후 '비용 청구'

□ ’18년 추진 실적

○ 자문위원회 개최 : 총 2회

○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 : 총 6명의 지원신청자 중 4명 지원대상자로 선정

○ 상담지원 비용 지급 : 총 1명, 190,000원 지원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	연중	6회 개최
지원 심청에 따른 심의		매월 10건(예상)
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 수행		
상담지원제도 홍보		4회

□ 추진 계획

○ ’ 19년 주요 개선 사항

- 분기별 1회 학교 및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할 예정

○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
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

○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, 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

□ 추진 일정

○ ’ 19. 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□ 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‘19.1.10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	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’19	’18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지원	71,380	160,020	17,380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				-
계	71,380	160,020	71,380				

작 성 자	예방사업부장 : 송효근 ☎ 6350-5220	담당 : 안승희 ☎ 5222

6 학교폭력피해지원

☐ 사업 개요

○ 목적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,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함

○ 근거
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주요내용
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
-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

☐ '18년 추진 실적

○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 지급 : 117건, 106,028천원 지급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	연중	55건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		30건
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		100건
법률 자문 수행		12건

□ 추진 계획

○ ′19년 주요 개선 사항

-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 지급 절차 개선

: 사전 의견 청취 절차 강화

: 가해자 주소 확인 방법 개선

: 전산개편

○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리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비용 지원

○ 구상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수행

- 피해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을 회수학 위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

□ 추진 일정

○ ’19. 1~12월 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□ 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‘19.1.10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	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쪽수
	’19	’18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학교폭력 피해지원	112,479	120,460	112,479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				-
계	112,479	120,460	112,479				